

대학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지선구*

¹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Issues of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Seonkoo CHEE^{1*}

¹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about imposing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university employees' inventions. In this research, various issues of taxation related to such compensation are examined, with Supreme Court Judgement 2014Du15559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confusion associated with this taxation. An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s proposed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in the university field, which is able to make various type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fall into the category of tax exemptions. It is concluded that if the Income Tax Law is amended to refer to the definition of technology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stead of tha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compensation resulting from newly emerging IPRs and technical know-how, which are currently taxed, can become tax exempt.

Keywords : Amendment, Compensation, Employee Invention, Income Tax, University

1. 서론

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하면 대학 소속의 산학협력단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그 대가로 발명자인 대학교수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한다. 직무발명 보상에

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 Seonkoo CHEE(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Tel: +82-54-478-7876 email: lincerchee@kumoh.ac.kr

Received March 2, 2016

Revised (1st April 11, 2016, 2nd April 20,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는 직무발명의 출원에 따른 출원보상, 특허권으로 등록됨에 따른 등록보상 및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용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보상하는 처분보상 등이 있다.

대학교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그 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세율도 달리 책정되는 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그간 대학들은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처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1]. 일례로 금오공과대학교의 경우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에 따른 처분보상도 비과세하되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양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기관 성격은 일부 다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와 달리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고 한다[2].

동일한 태양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달리 취급했던 이유는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관청의 해석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1].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기업체에 실시권을 설정하고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하였으나[3,4] 조세심판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권리로부터 기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5]. 대학의 기술이전이 2011년 기준으로 480억에 이르고 이의 55.1%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상황[1]으로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따라 기술이전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비교적 명확히 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바 있어[6], 본 논문에서는 동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하면서 연구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보상금 형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름

대로의 과세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또한, 동일한 문 제인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제도를 다루었던 종전 연구[1] 결과를 참고하여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2. 쟁점 대상판결

2.1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2]) 법원의 판단

2.1.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

원고(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소속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기업체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출원서 등에 발명자로 등록된 직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1) 소정의 비과세 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피고(북대전세무서장)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 원고 소속 연구원의 발명은 원고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되는바, 종업원이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이 한 발명은 그 권리가 종업원에게 원천 귀속되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권리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1.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을 승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발

명자인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쟁점인 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에 대해서는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달리 해석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동 조문은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연구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한 연구기관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에 불과하다고 한정 해석하였다.

2.1.3 이 사건 보상금의 성격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체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정당한 수준으로 지급 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1)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내부 규정이 직무발명의 보상에 관해 발명진흥법 해당 규정에 맞게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2.2 이 사건 상고심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급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거나 지급원인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관련 법령

3.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면 직무발명으로 취급된다. 여기서 발명이란 특허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을 말한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예약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문서로 알려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 내지 6항 참조).

대학교수의 발명이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대학교수를 대학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에 큰 이견은 없으나, 교수의 본질적 직무와 대학 업무범위간의 상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연구’가 대학교수의 본질적 직무 중 하나이므로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대학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는 것인 한 연구과정 중에 창출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7].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도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직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등을 통해 창출한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8].

3.2 소득세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되,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법정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정 보상금은 상기 법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여기서 ‘특정 보상금’이란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및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준을 정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은 1979.12.28.자로 소득세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3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이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중 특기사항으로, 2008.1.1.자 시행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ii)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5]. 또한, 2010.2.1.자 시행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과세되는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우수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Table 1. Revision History of the Income Tax Law

Revised	Non-Taxation Rules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1980.1.1. (Law No.3175)	Article 5 (Non-Taxable Income) No income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income 5. Other income (f)The compensation received from his/her employer for an superior invention, invented related to the duties and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1996.1.1. (Law No.4803)	Article 12 (Non-Taxable Income) No income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income 5. Other incom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d) The compensation received from his/her employer for an superior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and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2008.1.1. (Law No.8825)	Article 12 (Non-Taxable Income) No income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income 5. Other incom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d) The following compensation given to an superior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and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i) Compensation received by an employee from his/her employer,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 Compensation received by a faculty member of a university from it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same Act;
2010.2.1. (Law No.9785)	Article 12 (Non-Taxable Income) No income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income 5. Other incom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d) The following compensation received for an employee inven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 Compensation received by an employee from his/her employer,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 Compensation received by a faculty member of a university from it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same Act;

4.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관련 쟁점

검토

4.1 소득세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비과세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외’의 소득을 말하므로,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해당 보상금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고, 사업소득은 농업·제조업 등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연구기관이 정기적으로 기술료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우발적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9].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실시보상금은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바, 반드시 일회성의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통상 일시불이거나 기업으로부터 경상기술료로 받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확정함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데, 이에 관해 일반론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10]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정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0]. 생각건대, 반복성과 계속성을 따져 수학적으로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현실과 산업재산권의 활용 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오히려 사회통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자가 사업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로 정해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소득세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적 의도나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등에 의해 피동적, 우발적으로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거나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2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발명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라 대학교수의 보상금이 비과세되려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과 직간접적

으로 관계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 문구 해석상 대학교수가 한 직무발명 외의 ‘자유발명’은 비록 산학협력단이 승계취득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산업재산권이 아니라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원인으로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한편,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여 주고 지급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학교수가 창안한 노하우를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하고 기술료를 받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진다. 노하우는 특허화 되지 않은 발명, 공식, 설계와 과정, 비법, 축적된 기술, 경험, 영업전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포괄한다. 대학은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원천연구도 수행하는바, 기업과의 관계에서 특허로 출원하지 못하고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노하우로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1].

노하우 중 특허출원하지 않은 직무발명이 기술이전되었다면 그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1].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은 발명의 등록 여부 또는 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해석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률 제9785호에 의해 2009.7.31.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우수발명’이라는 조건이 요구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동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노하우 중 설계과정, 비법, 생산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가 소위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어 장차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직무발명에 해당되므로 넓게 해석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단순 공식, 경험, 영업전략, 판매방법, 경영상의 정보등은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해석론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되기 어려울 것이다.

4.3 발명의 우수성과 과세 여부와의 관계

종전 소득세법(법률 제9785호에 의해 2009.7.31.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되려면 해당 발명이 ‘우수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우수발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어떤 발명이 우수한 발명이고 비과세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1980.1.1.자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2를 기초로 유추해 보면 우수발명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출원 여부에 관계없이 우수발명으로 의제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나, 과세당국은 우수발명이란 ‘특허로 등록된 직무발명’만을 의미하고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거절된 발명은 제외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1, 5, 12]. 그러나 조세의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써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는바, 우수발명이란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과세 범위를 특허등록된 직무발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11]. 진술한 바와 같이 소위 우수발명요건은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바, 향후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더욱 곤란할 것이다.

4.4 비과세되는 보상금의 종류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출원보상, 등록보상 및 대학이 해당 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지급하는 실시보상은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무발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한편,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위 출원유보보상의 경우는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출원을 유보한 경우라도 동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출원유보보상금은 해당 직무발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출원 중에 기술이전되어 지급되는 보상금도 비과세되므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출원 유보의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 즉,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결

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보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감안[11]하면, 출원유보보상금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업체에 실시를 허여하고 받은 기술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처분보상의 경우, 종전 세무관청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원천귀속된다고 하면서 직무발명과는 연관성이 없어 비과세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2]. 그러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정당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처분보상은 대학교수가 한 직무발명을 대학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한 이상 실시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2, 6, 10] 처분보상이 직무발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상 더 이상의 해석상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규정 개정 제안

5.1 서설

2011년 감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보아 과세하도록 시정조치하면서 촉발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기준에 대한 논란[1]이 금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6, 11] 그러나 대학이 행하는 기술이전은 단순한 특허권의 판매나 실시허여를 넘어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기술출자,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현행의 소득세법 관련 조문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특허권을 넘겨 기술출자를 하고 지분을 받은 후,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무당국으로는 종전의 보상금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과세되는 발명의 종류도 특허법상 발명, 실용신안법상 고안,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할 때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술사상의 경우라도 출원 형식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창안하여 특허출원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이

나, 동일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된다. 현행 세무당국의 태도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 산업재산권임에도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입체상표를 창안한 경우 디자인권으로 출원하면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지만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보상받으면 과세대상이다. 그 외에 반도체배치설계, 유전자 서열, 디지털 콘텐츠, 게임 시나리오 등 다수의 신지식재산권이 발명진흥법상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5.2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혜택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비과세 기준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Non-Taxation Rules for Each Type of Employee Inventions

Subject & Matter		Employee Invention on the Law	Non-Taxat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		Etc.
			Before	Present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pplied	O	×	O	
	Registered	O	O	O	
Trade Mark		×	×	×	Including 3D Mark
Knowhow	Technical	O	×	O	
	Non-Tech.	×	×	×	
Computer Software		×	×	×	
Newly Emerging Intellectual Prop.		×	×	×	Circuit Layout Gene Sequence Digital Contents
Technical Consulting		×	×	×	

입체상표,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배치설계 등의 신지식재산권 등은 기술적 창작에 속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명확한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발명가 및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에서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동법 제27조의2에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및 발명진흥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산업자문은 통상 대학교수들이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행하는 산학협력 활동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기술적 창작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비과세되도록 바뀌길 필요가 있다. 통상 산업자문 초기에는 특허로 출원할 정도의 발명을 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산업자문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발명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산업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개정방안 중 하나는 현행 소득세법상 발명진흥법을 인용하던 부분을 기술이전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규정을 인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기촉법 제2조제2호에서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1호에서 기술이란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그에 관한 기술정보 및 이전·사업화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Table 2의 기술이전 형태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촉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면 Table 3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3 개정안에 따른 효과

기촉법 제2조제1호는 그 해석상 신지식재산과 기술적 노하우까지도 포괄하므로 Table 3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비과세에서 누락되었던 입체상표,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배치설계 등의 신지식재산 및 산업자문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한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는 기술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신규 개정안을 도입하면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기술출자 또는 지분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배분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대학이 B교수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기초로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출자를 하고 C연구소기업이 매출을 올려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A대학은 B교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규 소득세법 개정안 제12조제5호라목2)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

법에 따르면 컴퓨터소프트웨어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대상도 아니어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Table 3.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Present Income Tax Law	Income Tax Law Suggested
Article 12 (Non-Taxable Income) No income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income	Article 12 (Non-Taxable Income) (the Same)
5. Other incom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5. (the Same)
(d) The following compensation received for an employee inven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d) The following compensation received for a technology, developed by an employee related to the duties,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 Compensation received by an employee from his/her employer,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 (the Same)
(i i) Compensation received by a faculty member of a university from it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same Act;	(i i) (the Same)

발명진흥법을 인용하던 것을 기촉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면서 비과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은 기촉법 제2조제1호에 나열된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및 기술에 관한 정보(기술적·과학적 노하우)로 한정되므로 입체상표, 산업자문 및 신지식재산권 등만 포함될 뿐 그리 과도하게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 가능한 기타 소득 세액이 11억6천만원에 불과[1]해 상기와 같이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세액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

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발명진흥법과 소득세법을 분석해 보면, 그 보상금이 비과세되는 직무발명은 출원·등록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법상 발명, 실용신안법상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으로 제한되고, 컴퓨터소프트웨어나 상표권은 제외된다. 노하우의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할 때 직무발명 등으로 인정될 만한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가 가능하나 그 외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과세되는 보상금 종류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및 실시보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보상의 경우도 최근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기초하여 볼 때, 실시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소득세법만으로 최근 대학이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힘들다. 특히,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출자나 지분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두어 발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던 원래의 소득세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신지식재산권 등 향후 지식재산입국을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을 소득세법에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에 관한 정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누락되었던 입체상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이전 보상금을 비과세 범위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594>

- [2] Daejeon High Court Judgement 2014Nu29, 20 November, 2014.
- [3] National Tax Servi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011, 5 January, 2012.
- [4] National Tax Servi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62, 19 January, 2012.
- [5] Tax Tribunal, “Conforming whether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Paid to Faculty by University-Industry Foundation is a Miscellaneous Income or not”, JoSim2012Jeon2623 (Judgement Case), 25 April, 2013.
- [6] Supreme Court Judgement 2014Du15559, 23 April, 2015.
- [7] Byeung-Woung Lim, Insight Patent Law, Vol. 14, pp. 303-304, Hanbit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5.
- [8]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Division-3013, 23 August, 2013.
- [9] Tax Tribunal, “Conforming whether the Compensation Paid to Employees by the Employer is a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n the Income Tax Law or not”, JoSim2012Jeon1728 (Judgement Case), 22 June, 2012.
- [10] Supreme Court Judgement 2000Du5203, 24 April, 2001.
- [11] Supreme Court Judgement 2014Du15542, 9 April, 2015.
- [1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 46073-181, 30 December, 2002.

지 선 구(Seonkoo CHEE)

[정회원]



- 199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 우주공학과 (공학박사)
- 1998년 3월 ~ 2003년 6월 : 삼성전자(주) 책임연구원
- 2003년 7월 ~ 2014년 2월 : 특허청 특허심사관(변리사)
- 2015년 2월 ~ 현재 : 금오공대 산학협력단 조교수

<관심분야>

산업재산권, 기술사업화, 산업재산정책, 창업

References

- [1] Dong-Kyu Na, “Suggestions for the Non-Taxation Scheme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594-5600, 2013.